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확대방안

Desire for Work of Severely-disabled People and the Plan of the Expansion of the Employment through th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이순희, 박석용

충북대학교대학원 행정학과 박사수료

Soon-Hei Lee(dream4679@hanmail.net), Seok-Yong-Park(9psy9@hanmail.net)

요약

최근의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영역 확대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개념에 대한 변화와 자립생활에 대한 확산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의식 신장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노동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가치부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인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주시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청주시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중증장애인 | 근로 | 고용 |

Abstract

The latest society is very quickly changing so that it is placed in difficult life of not only the non-disabled people but also disabled people. The demand on welfare of the disabled people is continually increasing by the increasing in population of the disabled people by the expansion of the disabled realm and changing of family structure. The changing about the concept of the disabled, the spreading about the independence life, especially the expanding about the awareness of the disabled human right, and the circumstance and the paradigm of the surrounded by the disabled welfare is rapidly changing. The right to work is related to the living, and is the important part of value endowment in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self-realization, and is the core of the independence life. Therefore, this study is researched into the desire for work of the severely-disabled people in Cheong-ju City and their actual condition, so I present the desire of severely-disabled people and the suitable creation of the employment in Cheong-ju City, and the plan of the expansion of the disabled employment opportunity in my study.

■ keyword : | Severely-disabled People | Work | Employment |

*본 논문은 청주시 연구지원사업(2008.8)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접수번호 : #090825-003

접수일자 : 2009년 08월 25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9월 09일

교신저자 : 이순희, e-mail : dream4679@hanmail.net

I. 서 론

장애인의 직업을 가지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개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Strauss 등은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책성과 시간 및 공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등 직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직업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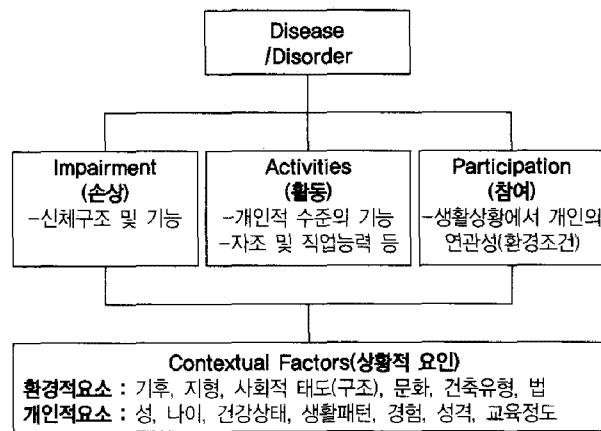
노동권은 인간의 삶에 있어 생계는 물론이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이라는 삶의 가치부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장애인고용정책의 기본적인 이념은 정상화(normalization)로 이는 사회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 본인에게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무능력을 신장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일일 것이다. 기업이나 사회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을 재구성하여 장애인에게 걸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것이다. 국가발전이 지방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초석으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발전의 중심이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 및 다양한 복지욕구충족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주시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청주시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001년 5월 세계보건위원회(WHO)는 장애의 개념을 그동안 사회적인 관점보다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서 개인적인 관점을 포함하여 사회·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모델의 통합적이며 보편적 개념인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개념을 승인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과 참여(participation) 그리고 상황요인(contextual factors)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정의한 것이다. 단순히 개인의 신체기능 및 구조의 손상(impairment) 등 건강적인 부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적요소와 개인적 요소를 포함한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의 일상생활로 대표되는 활동과 사회적 기회로 대표되는 참여의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 즉, 개인의 건강 및 기능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사회적 요인이 개인의 삶과 생활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인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고 제한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료 : WHO. 2001. 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Author.

그림 1. ICF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

2.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2급 이상의 등록 장애인이며, 뇌병변장

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의 장애인을 말한다. 중복장애인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정의를 따른다.

3. 직업재활과 노동정책

직업재활은 두 가지의 구체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적절한 고용확보 및 유지이며, 둘째,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출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활동의 주체이다.'라는 말과 같이 장애인직업재활과 장애인복지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3]. 일반적으로 장애인고용정책에서 제시하는 장애인의 일자리는 상당수 장애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거나 장애인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와 장애인 당사자인 구직자의 상호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노동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하는 직업적 환경 구성과 다양한 근로욕구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비롯되는 노동정책은 노동현장에서 직업수행 환경과 관련된 문제, 노동자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건강과 주거문제, 재해나 퇴직 등 노동기회 상실과 관련된 문제, 여성이나 연소자 같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문제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불완전하게 고용된 노동자가 과반수가 넘는 상황에서는 이들에 대한 소득보전이나 고용보장, 직업훈련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득보장정책에 포함시키며 소득보장정책이 일시적 빈곤의 완화라면 노동시장정책은 빈곤의 제도적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정책과 소득보장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의 성공이 필수적인 것이다[4].

이상과 같이 중증장애인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의 문제와 매

우 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직업재활정책 수립과 집행은 중증장애인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변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인간에게 있어 노동권은 일 자체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는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권리이며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4. 선행연구 검토

중증장애인 관련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을 중심으로 장승권(2007)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사회적기업 법인화 및 경영관리 합리화 연구』, 심진예(2005)의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제도 도입방안』 등 사회적기업이나 자회사 또는 외국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연구와 전정식(2006)의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자립생활센터 역할 방안』과 이효성(2005)의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김성희(2006)의 『중증장애인의 재택고용 활성화 방안』 등 정부 및 관련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및 재택고용 등 단순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등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취업 및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경증장애인 중심 연구가 다수이며,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나 실태를 근거로 한 연구는 미미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지원을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각 지방정부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주시의 만 18세 이상 55세의 9개 장애영역으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와 이동성 제한의 많고 적음으로 범주화하여 1급~3급의 중증장애인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복지관, 장애인관련 단체 등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배포 실시하였다. 총 402부를 회수하여 연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25부를 제외하고 37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설문지를 사전조사 및 중증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 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1. 조사 자료의 구성 및 내용

조사내용	세부내용	문항수
일반사항	• 연령, 성별, 학력, 수급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12개
가정사항	• 가구소득, 부채 등 가정의 문제, 장애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등	9개
근로사항	• 미취업 사유, 희망직종 및 임금,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방안 등	16개
작업능력	• 신체 활용정도, 이동 및 접근성 등	12개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분석 하였다.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성별과 취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집단별 평균 비교 등의 분석을 하였다.

4. 연구의 한계

15개 장애유형 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와 이동성 제한의 많고 적음으로 범주화 하여 9개 장애유형에 국한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전체 장애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대와 40대가 모두 117명(31.0%)로 가장 많았고 30대 94명(24.9%), 50대가 49명

(13.0%)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223명(59.2%), 여자 154명(40.8%)로 나타났다.

2. 중증장애인의 근로욕구 및 실태

2.1 중증장애로 인한 개인과 가정의 특성 및 실태

주 장애유형 및 등급과 일상생활능력은 [표 2]와 [표 3]과 같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가족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감은 매우 심하다 45명(12.3%), 심하다 94명(25.6%), 전혀 심하지 않다 93명(25.3%), 심하지 않다 135명(36.8%)으로 응답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심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39명(37.9%)이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은 경제활동의 제약이 102명(28.5%), 수발을 못한다는 부담감이 101명(28.2%), 피로와 개인생활의 제약이 99명(27.5%)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해 볼 때 수발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25% 이상이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매우 심하다가 96명(25.8%), 심하다가 137명(36.8%)으로 총 235명(62.6%)에 달하여 장애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주관적 시선이나 인식이 어렵다는 응답자가 144명(38.8%)으로 나타나 전체 어려움 중 두 번째를 차지하여 일반인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불안정한 가정생활도 89명(24.1%)으로 수발의 어려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여동성 종성 장애 분류		장애등급	
구분	빈도(%)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지체장애 노병변장애	137(36.3) 43(11.4)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	180 (47.7)	1급	99 (26.3)
시각장애 청각언어중복장애 심장 및 신장장애	29(7.7) 37(9.8) 17(4.5)	이동에 제한이 적은 장애	83 (22.0)	2급	153 (40.6)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109(28.9) 5(1.3)	정신적 장애	114 (30.2)	3급	125 (33.2)
합계	377 (100.0)	합계	377 (100.0)	합계	377 (100.0)

표 3.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구분	세면	목욕	식사	화장의	(단위: 명 %)		
					소변	대변	가정내 이동
혼자 가능	326 (86.5)	285 (75.6)	329 (87.3)	310 (82.2)	334 (88.6)	327 (86.7)	339 (89.9)
조금도움	23 (6.1)	42 (11.1)	24 (6.4)	40 (10.6)	16 (4.2)	19 (5.0)	24 (6.4)
많은도움	9 (2.4)	23 (6.1)	10 (2.7)	11 (2.9)	10 (2.7)	12 (3.2)	3 (0.8)
전적인도움	19 (5.0)	27 (7.2)	14 (3.7)	16 (4.2)	17 (4.5)	19 (5.0)	11 (2.9)
합계	377 (100)						

구분	계단 이용	외출	장보기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언어	언어	
혼자 가능	259 (68.7)	255 (67.6)	188 (49.9)	290 (76.9)	275 (72.9)	
조금도움	42 (11.1)	65 (17.2)	102 (27.1)	39 (10.3)	44 (11.7)	
많은도움	24 (6.4)	27 (7.2)	40 (10.6)	32 (8.5)	40 (10.6)	
전적인도움	52 (13.8)	30 (8.0)	47 (12.5)	16 (4.2)	18 (4.8)	
합계	377 (100)	377 (100)	377 (100)	377 (100)	377 (100)	

2.2 중증장애인의 근로특성 및 실태

취업상태는 미취업 및 실직이 258명(68.4%), 취업상태가 119명(31.6%)로 미취업인 경우가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취업 및 실직의 원인으로는 중복응답 포함 725 건 중 '장애가 심해서' 147건(20.8%)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 체계가 307건(43.6%)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미취업 및 실직의 원인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가정의 원인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 다음은 '장애에 맞는 적절한 직종이나 취업처가 없어서' 130건(18.4%)가 포함된 사회체계가 270건(38.1%), 순이었다.

원하는 취업직종은 재택고용 35명(13.9%), 일반자영업과 영세자영업을 포함한 자영업 33명(13.1%), 기능기술직 33명(13.1%), 전문직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공동작업장 각각 30명(11.9%) 순이었고, 원하는 취업 형태는 전일제 104명(41.6%), 시간제 38명(15.2%), 프리랜서(자율근무) 37명(14.8%), 형태 무관 32명(12.8%)의 순

이었다.

원하는 월평균 급여는 150만원 이상이 52명(20.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약 80만원 미만)가 49명(19.7%)으로 많았다. 급여에 상관없이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41명(16.5%)이나 나타나 급여와 무관하게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었다.

2.3 직업의 필요성 및 취업의 활성화 방안

중증장애인들이 생각하는 취업활성화 방안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법률 및 제도 정비(의무고용의 이행 등)가 66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서비스 제공이 65명(17.2%)으로 2순위이었으며, 다음이 고용부담금의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적극 활용으로 57명(15.1%)이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의 역량강화도 39명(10.3%)이 응답하여 장애인 본인 노력의 필요성도 나타냈으며, 재택고용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근로시설(표준사업장 등) 확대의 필요성을 나타낸 경우도 61명(16.2%)이나 되었다.

2.4 개인 및 가정적 특성이 근로욕구 및 문제에 미치는 영향

2.4.1 성별이 근로욕구 및 문제에 미치는 영향

[표 5]에서와 같이 성별이 원하는 취업직종이나 형태, 급여수준, 현재 취업여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직업훈련 및 직업 전 훈련과 미취업 및 실직의 원인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직업훈련에 있어 남성은 직업훈련 경험이 38명(25.9%)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15명(13.6%)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직업훈련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 및 실직에 있어 남성은 사회적체계의 문제점을 여성은 직장 및 지역체계의 문제점을 보다 많이 지적하고 있다.

표 4. 직업이 필요한 이유 및 증증장애인의 취업 활성화 방안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증합	구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신의 자립	183 (48.5)	62 (16.4)	245 (32.5)	고용부담금의 적극 활용	57 (15.1)
가정의 경제적 도움	129 (34.2)	89 (23.6)	218 (28.9)	관련법률 및 제도 정비	66 (17.5)
시민으로서 사회참여	13 (3.4)	47 (12.5)	60 (8.0)	고등교육 기회확대	27 (7.2)
사회적 경험의 기회	22 (5.8)	58 (15.4)	80 (10.6)	직업훈련	65 (17.2)
가정생활의 한계	12 (3.2)	41 (10.9)	53 (7.0)	장애인 역량강화	39 (10.3)
소일거리로(여가 등)	8 (2.1)	27 (7.2)	35 (4.6)	직업정보 제공	25 (6.6)
퇴행 방지	9 (2.4)	35 (9.3)	44 (5.8)	직업재활 전달체계 개선	34 (9.0)
기타	1 (0.3)	6 (1.6)	7 (0.9)	재택고용	29 (7.7)
무응답				보호작업장 및 근로시설 확대	32 (8.5)
합 계	377 (100)	377 (100)	754 (100)	합 계	377 (100)

표 5. 성별이 취업 및 직업훈련 여부, 미취업 및 실직 원인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 分	성별		전체	χ^2
	남자	여자		
직업훈련 경험 여부	경험 있음	38(25.9)	15(13.6)	53(20.6)
	경험 없음	109(74.1)	95(86.4)	204(79.4)
미취업 원인	개인/기정체계	99(70.7)	75(72.8)	174(71.6)
	직장/지역체계	4(2.9)	10(9.7)	14(5.8)
	사회체계	37(26.4)	18(17.5)	55(22.6)

* $\chi^2 \leq .05$

2.4.2 장애유형이 근로욕구 및 문제에 미치는 영향

직업훈련 경험이나 미취업 및 실직의 원인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으나 이동성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이 미취업 및 실직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6. 장애유형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 分	장애유형 대분류			전체	χ^2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	이동에 제한이 적은 장애	정신적 장애		
취업 여부	미취업	137(76.1)	49(59.0)	72(63.2)	258(68.4)
취업	43(23.9)	34(41.0)	42(36.8)	119(31.6)	.008*

* $\chi^2 \leq .0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장애인이 204명(7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미취업이 258명으로 68.4%였다. 그 중 127명(49.2%)이 미취업 및 실직의 첫 번째 이유를 자신의 장애가 심하기 때문이라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2명(12.4%)이 장애에 맞는 적절한 직종이나 취업처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체 응답자중 131명(34.7%)이 장애인의 역량강화로 나타났고, 직업훈련 및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직종으로 컴퓨터 관련 34명(13.9%), 조리 관련 33명(13.5%), 인터넷 쇼핑(쇼핑몰 관리 및 운영) 및 고객관리(고객상담 및 전화상담) 순이었다.

둘째, 증증장애인의 근로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회망 급여에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라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110명(44.2%)이며 100만원 미만까지 하면 154명(61.8%)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하는 취업직종에 있어 업종에 상관없음 16명(6.3%)과 단순노무직 24명(9.5%)으로 나타나 증증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절실히 함을 나타내고 있다. 원하는 취업직종에 있어서 재택고용이 35명(13.9%)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보호작업장 및 공동작업장이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재택고용 및 단순노무관련 부업과 보호작업장 및 공동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은 미용 및 조리 관련 직종을 원했고, 남성은 운전 및 지게차 등 기능기술직에 대한 부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에서 전일제 고용보다는 시간제 등 고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과 장애유형, 장애특성에 맞는 직업훈련과 취업 직종 및 형태 개발이 필요하다.

V.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방안

조사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관련 모든 영역에서 장애유형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장애유형을 기초로 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 지출은 GDP의 0.002%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1.60% 수준으로 2%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5]. 이는 장애유형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기 하기 때문이므로 적극적인 장애인고용정책과 예산정책을 세워야 하며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6].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형태를 다양화 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시간제근로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 하고 그로 인해 주당 노동시간이 20~30시간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중증장애인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7] 하여 고용유지를 및 안정성을 향상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재택고용 및 보호작업장, 공동작업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 및 고객관리에 관한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을 통한 재택고용과 보호작업장, 공동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이 높은 욕구를 타나태고 있으며 경쟁고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를 위한 노동 기회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 동향[8]을 보면 제조업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과 장애인일자리(D&D care)와 활동보조원, 보육 및 수발 도우미 사업과 연계하여 업종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장애인직업재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과 취

업 그리고 직장에서의 안정적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모든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문제나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요인보다도 장애유형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9]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 각 부처마다 나름대로의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 특성과 현안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장애인에게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셋째, ICF는 장애(Handicap)에 대하여 개인적 장애(Disability)와 사회적 장애(Barrier)로 정의하며, 개인적 장애를 신체장애(Impairment)와 의식장애(Disability)의 통합적인 것으로 목적지향적인 주체행동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도 자신의 몫과 책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삶의 목표를 갖고 주체적으로 주변의 자원과 정보를 이용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ICF는 장애(Handicap)에 대하여 개인적 장애(Disability)와 사회적 장애(Barrier)로 정의하며, 개인적 장애를 신체장애(Impairment)와 의식장애(Disability)의 통합적인 것으로 목적지향적인 주체행동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즉,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스스로 목적 지향적이며 주체적 삶(행동)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것이다. 장애인도 삶의 목표를 갖고 그것을 위해 주체적으로 주변의 자원과 정보를 이

용하여 능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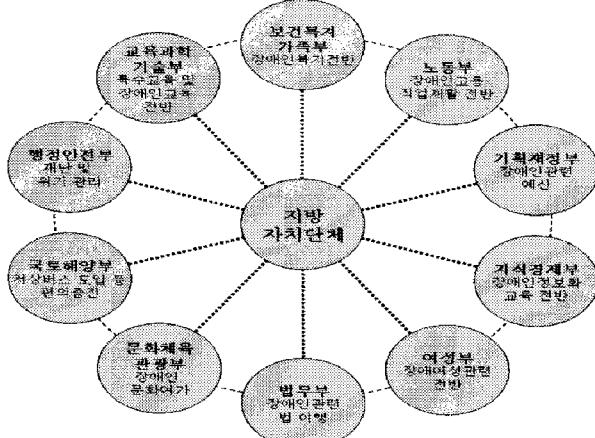


그림 2. 장애업무 관련 지자체와 정부부처간 연계망

넷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가장 나중에 취업되고 가장 먼저 해고되는 계층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그런 양상은 더 많이 나타난다. 장애인의 무고용에 강제사항을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기업이 솔선해서 실행해주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기능인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성, 공공질서를 지켜 다른 업체·집단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공성, 특정한 집단에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공익성 등의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공익적 책무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주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도 동등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장애를 갖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추락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남연희, 장은혜, “청각장애인의 직업유지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장애와 고용, 제19권, 제1호, p.56, 2009.
- [2] 김용득, 김진우, 유동철,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7.
- [3] 정무성, 양희택, 노승현,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2008.
- [4] 강위영, 조인수, 정대영,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도서출판 성원사, 1993.
- [5] 박경순, “제13회 직업재활사 연수회(3급) 자료집 ‘재활행정 및 정책”, 한국직업재활학회, pp.319~320, 2008.
- [6] 나운환, “사회·환경변화와 MB정부 직업재활정책의 과제”, 2008년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2008. 6. 한국직업재활학회, p.79, 2008.
- [7] 노동부 외 8개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행정안전부, 2008.
- [8] 장승권, 박윤규, 이상훈, 최우석, 남원호, 증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의 사회적 기업 법인화 및 경영관리 합리화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 [9] 통계청, 2001~2006년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특징 조사, 2008.

저자소개

이순희(Soon-Hei Lee)

정회원



- 1996년 8월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 2008년 7월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박사수료)
- <관심분야> : 행정 콘텐츠, 문화 콘텐츠

박석용(Seok-Yong Park)

정회원



- 2002년 2월 : 청주대학교 사회
복지학과(사회복지학 석사)
- 2008년 7월 : 충북대학교 행정
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행정 콘텐츠